

채권등매출확인서

① 인적사항

매수자 (개인 또는 법인)	상 호(법 인 명)		성 명(대표자)	
	사 업 자 등 록 번 호 (또 는 법인등록번호)		주민등록번호	
매도자 (법 인)	주소(또는 법인소재지)		(전화번호:)	
	법 인 명		사업자등록번호	법인등록번호
	대표자성명		주민등록번호	

② 채권등의 매도내역

①종목명	②유가증권 표준코드	③권 종	④매 수	⑤채권 등 번 호	⑥액면금액 합 계	⑦보유기간 (일 수)	⑧ 적용이자율	⑨원천징수 세액
						. . .부터 . . .까지 (일)		
합			계					
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02조제8항제2호에 따라 채권등을 매도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매도자(법인)

(서명 또는 인)

작성 방법

- 이 확인서는 법인이 개인 또는 다른 법인에게 채권등(집합투자증권 포함)을 매도한 경우로서 실물출고가 있는 경우에 매수자별로 작성합니다.
- ①종목명란: 채권·양도성예금증서(CD) 또는 집합투자증권 등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
- ②유가증권표준코드란: 한국거래소,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부여한 채권 등 관련 상품코드를 적습니다.
- ⑦보유기간란: 매수일(또는 직전 원천징수일, 결산·분배일)과 매도일을 각각 적으며, ()안에는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93조의2제2항의 기간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 일수 또는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제13조에 따라 매수일(또는 직전 원천징수일, 결산·분배일)의 다음 날부터 매도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를 적습니다.
- ⑧적용이자율란: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93조의2제3항 또는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11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[집합투자증권의 경우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제13조제1항에 따른 좌(주)당 배당소득금액]을 적습니다.
- 음영으로 처리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.